

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34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1991년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위탁되어온 사업으로써,
- 나. 2018.2.28.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및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재계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(국내기능경기대회)
-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(권한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9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 대회 지원 사업은 서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사업으로 구분되며, 대회 기간 동안 폴리메카트로닉스 및 자동차 정비 등 50개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의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여야 하며,
각 직종별 과제에 부합하는 설비 및 재료의 준비, 경기의 운영 등 종목별 특수성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함
- 이에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
- 따라서 서울기능경기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 및 운영할 수 있고, 대회 직종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현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서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시상
-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지원

라. 민간위탁기간

- 3년 (2018.3.1 ~ 2021.2.28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재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619백만원('18년)
- 산출근거
 - 서울대회 개최 474백만원, 전국대회 참가지원 1,223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붙임3)

- 2017년 제3차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위원회 : 재계약타당성 등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숙련기술장려법

제20조(국내기능경기대회)① 고용노동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숙련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·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.

제25조(위임 및 위탁)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, 이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7조(권한의 위탁) ① 시장은 시대회 및 전국대회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(이하 "공단서울지역본부장"이라 한다)에게 위탁한다.

② 공단서울지역본부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기준)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**
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**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
제6조(민간위탁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(1~8호 생략)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